

영농조합법인 설립 어떻게 하나?

-홍보부-

I. 영농조합법인이란?

가. 협업영농을 통하여 영농의 능률화와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희망하는 농민은 자유롭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됨.

○영농조합법인은 영농규모가 작은 농민끼리 농지, 가축, 농기계등 영농자산을 공동출자하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협업적 전문영농을 하는 새로운 제도임.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작업을 협력하고 서로 분담할 수 있으며, 경영규모도 커져 영농기계화가 쉽게 이루어짐은 물론 전문적인 영농으로 절감된 인력은 농외취업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음.

나. 자격을 가진 농민 5인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 ①당해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 ②조합법인 사무소 소재지나 연결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③1ha(3,025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축산의 경우 소 30두, 젖소 20두, 돼지 200두, 닭 1만수등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민으로 1가구 1인에 한함.

○조합원 자격을 가진 농민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정관의 작성은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영농조합법인 정관례를 기준으로 참고하면 간편함.)

○정관작성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설립.

다. 전문적인 영농은 물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작업의 대행,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등 다양한 사업 영위

○영농조합법인은 논농사, 과수, 원예, 시설농업, 축산 등의 영농활동은 물론 가공·판매 등의 부대사업과

○농산물보관창고, 건조장등 지역농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농작업의 대행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라. 농지, 농기계등 현물과 현금으로 출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 농기계, 가축, 현금

등으로 출자할 수 있으나,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에 한하여 현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만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영농조합법인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마. 일반법인과 달리 농업경영에 있어 여러 가지 지원 실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 개별농민으로 영농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

○법인세 감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는 농지소득전액과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중 일정금액(소득세법 농가부업소득 면제금액 500만원×조합원수).

○부가가치세 면제: 농작업대행구역은 면제, 영농조합법인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농기계등 농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조감법).

○지방세 감면: 조합법인이 고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농지세를 조합법인에 부과할 경우 면적이 커 누진과세되는 불이익방지를 위해 조합원별로 부과.

-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며 최저세율인 0.1% 적용.

〈조합원에 대한 세제상 지원〉

○양도소득세 면제: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감면: 조합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일정금액을 면제하고 그의

배당소득은 5% 분리과세.

○상속세 면제: 출자지분중 농지 9천평, 초지 4만 5천평, 산림지 9만평까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일반농민과 동일).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농민이므로 일반농민과 같이 영농자금, 농지구입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개별사업의 지원성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일반농민보다 확대.

· 영농자금: 농가당 영농자금 지원한도금액에 조합원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

· 농지구입자금: 일반농가 지원규모의 2배까지 지원.

· 농기계구입자금: 기계화 영농단으로 선정 지원.

※시군, 농촌지도소, 농(축)협, 농어촌진흥공사등 관계기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경영, 농업기술, 사업활동을 지원.

· 농(축산)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융자 2억원까지).

II.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없음(자율설립)→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농민 5인 이상(발기인)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민이어야 하며 1가구 1인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 법 제6조, 영 제6조〉

①당해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

모 경영 농민.

②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1ha(3,025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 또는 다음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가축사육 규모 (영 별표)

가 축	규 모	비 고
소·말	30두	마리수의 계산은 성 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두를 1두로 본다.
젖소·사슴	20두	
돼지	200두	
면양·산양	300두	
토끼·친치라·밍크·여우	5천두	
닭·오리·메추리	1만수	
꿀벌	150군	

○조합원자격의 상실 : 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정관을 발기인 5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5인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법 제6조 제5항)” 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음.

○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의 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영 제13조).

①명칭(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자는 동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법제6③)

- ②목적
- ③사업

- ④사무소의 소재지
 - ⑤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⑥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⑦조합원의 가입·탈퇴및제명시의 지분에 관한 사항
 - ⑧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사항
 - ⑨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⑩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⑪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⑫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⑬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상기이외의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 정부에서 농민의 정관작성을 돕고,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 고시90-40호('90.10.17)로 영농조합법인 정관례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정관작성시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법 제6조 ⑤)」를 하여야 함.

- 조합원의 모집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영농조합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원 모집(1가구당 1인)
- 조합원 명부의 작성 :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작성
- 출자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등

4. 창립총회

○정관,「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

결을 거쳐 최종확정

-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 창립총회의 의결할 사항

- ①정관의 승인
- ②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이사)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 ③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 ④설립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등

○창립총회의 의결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창립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창립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공증인법 제66조의2).

5. 출자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농기계, 가축 및 기타 현물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현금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에 한하여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음(영 제11조).

○출자의 불입 :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농지와 같은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

○출자증서의 발행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도 출자자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함)등을 기재.

※출자증서는 조합원의 지분상속시 상속공제의 근거가 되므로(상속세법 제8조의3②)출자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상속공제의 범위 : 농지 9,000평, 초지 4만 5천평, 산림 9만평.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

※농지출자에 따른 『농지상실』문제로 영농조합법인 가입을 주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6. 설립등기

가. 등기신청인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대표이사)

나. 등기신청서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다항의 등기사항은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2를 참조하여 법무사와 상의하여 작성

다.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영 제7조)

○등기사항

- ①명칭 ②목적 ③사업 ④사무소의 소재지
- ⑤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⑥해산사유를 정한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⑦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
- ⑧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공동대표)할 것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 ①창립총회 의사록(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정관
- ③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④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라. 관할등기소 :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

7. 설립통지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관할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정관, 조합원명부, 출자자 산내역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기재한 영농조합법인 현황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농협군지부 또는 축협과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8. 농협의 준조합원 가입

○영농조합법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은 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은?

○해당지역의 시·군, 농촌지도소등 행정기관이나 농협에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전화 (02)503-7241)

-농협중앙회 영농지도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전화 (02)735-7481)

●

양돈토막상식

• 변비가 심할 때

돼지 쓸개(膽) 1개를 씻어서 즙을 짜내고 껍질은 버린다. 이 쓸개즙에 차순가락으로 식초 한술을 넣어 갠다. 이것을 관장기(灌腸器)로 항문에 깊이 넣으면 된다. 돼지쓸개가 말랐을 때에는 끓인 물 한 컵을 부어 불린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2~3회 하면 대변은 곧 통하게 된다.

• 당뇨병이 심할 때

수돼지 쓸개(膽) 5개와 천화분(天花粉) 1돈푼(3.75g)에 물 1되 정도를 부어 은근한 불로 조린다. 물기가 없어지고 말랐을 때 꺼내서 다시 말려 가루를 만든다. 이것을 꿀과 개어 녹두알 크기만한 환약을 만들고 매일 세 차례 식후마다 다섯알을 입에 물고 양치질을 하며 삼키면 된다. 이렇게 계속하면 매우 효력이 있다.